

서울특별시 광진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352
----------	------

제출일자: 2017. 5. 11.

제 출 자: 광진구청장

1. 의결주문

서울특별시 광진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규제개혁 검토 및 현재 설치·운영하는 청소년시설 현황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운용상 나타난 미비점을 일부 보완·정비하여 청소년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함

3. 주요내용

- 가. 현재 청소년시설 운영에 맞추어 사업계획수립 및 예산·결산 기간 수정
나. 상위법에서 위임하지 않은 수탁자의 기부채납 명시 규정 삭제
- 제27조 제3항은 '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의 개·보수 등을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비용을 수탁자의 부담으로 하는 경우 이를 구청장에게 기부한 것으로 본다' 라고 하여 상위법인 「청소년기본법」 및 「청소년활동진흥법」에서 위임하지 않는 수탁자의 기부채납 의무규정
다. 청소년시설 명칭·주소변경 및 폐지에 따라 현행화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청소년기본법」, 「청소년보호법」, 「청소년활동진흥법」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다. 합 의 : 합의사항 없음
라. 기 타
(1) 신·구조문 대비표 : 별첨
(2) 입법예고(2017. 3. 17. ~ 4. 6.) 결과 : 의견없음
(3) 부패영향평가, 성별영향분석평가, 규제심사 : 해당없음

서울특별시 광진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서울특별시 광진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1항 중 “복지, 예산, 재무회계 및 문화체육 업무를 담당하는 5급이상 공무원”을 “복지, 교육, 예산, 재무회계 및 문화체육 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 공무원”으로 하고, “청소년복지·문화·체육 등 관련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”를 “청소년복지·교육·문화·체육 등 관련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”으로 한다.

제17조제1항 중 “매 회계연도 개시 120일전까지”를 “매 회계연도 개시 후 30일이내에”로 한다.

제18조제1항 중 “회계연도 개시 120일전까지”를 “회계연도 개시 후 30일내에”로 한다.

제27조제3항 중 “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의 개·보수 등을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비용을 수탁자의 부담으로 하는 경우 이를 구청장에게 기부한 것으로 본다.”를 “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의 개·보수 등을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”로 한다.

별표 1 및 별표2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 중 “주민등록번호”를 “생년월일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위탁 중인 청소년시설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 및 위탁운영 중인 것으로 본다.

[별표1]

서울특별시 광진구 구립청소년시설 현황(제3조 관련)

연 번	시 설 명 칭	주 소	비 고
1	청소년상담복지센터	광진구 아차산로 24길 17	
2	청소년지원센터 ‘꿈드림’	광진구 아차산로 24길 17	
3	중곡3동독서실	광진구 동일로 458	
4	자양4동제1독서실	광진구 동일로 52	
5	자양4동제2독서실	광진구 동일로2길 17	
6	구의2동독서실	광진구 자양로 38길 17-5	

[별표2]

서울특별시 광진구 구립청소년시설 사용료(제9조 관련)

연 번	시 설 명 칭	사 용 료	비 고
1	청소년상담복지센터	무 료	
2	청소년지원센터 ‘꿈드림’	무료	
3	중곡3동 독서실	300원	
4	자양4동제1독서실	300원	
5	자양4동제2독서실	300원	
6	구의2동독서실	300원	

《신 · 구조문 대비표》

현행	개정안
<p>제10조(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) ① (생략) 1. 복지, 예산, 재무회계 및 문화체육 업무를 담당하는 5급이상 공무원 2. 청소년복지·문화·체육 등 관련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</p> <p>제17조(사업계획의 수립) ①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 개시 120일전까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/p> <p>제18조(예산·결산) ① 수탁자는 매 사업연도마다 수탁업무에 대한 보조금, 자체수입금 등을 포함한 총수입·지출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120일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.</p>	<p>제10조(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) ① (현행과 같음) 1. 복지, <u>교육</u>, 예산, 재무회계 및 문화체육 업무를 담당하는 5급이상 공무원 2. 청소년복지·<u>교육</u>·문화·체육 등 관련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</p> <p>제17조(사업계획의 수립) ① -----<u>회계연도 개시 후 30일 이내에</u>----- ----- -----.</p> <p>제18조(예산·결산) ① ----- ----- -----<u>회계연도 개시 후 30일 이내에</u>----- -----.</p>

현행	개정안
<p>제27조(재산관리)</p> <p>① (생략)</p> <p>② (생략)</p> <p>③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의 개·보수 등을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비용을 수탁자의 부담으로 하는 경우 이를 구청장에게 기부한 것으로 본다.</p>	<p>제27조(재산관리)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 ----- ----- <u>받아야 한다.</u></p>

-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-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

조례 개정에 따라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제14조제2항제2호에 해당

-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,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

3. 미첨부 사유

조례 개정에 따라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 없음

4. 작성자

작성자 이름	교육지원과 행정7급 정다운
연락처	02-450-7166

교육지원과장 김정애